# 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24다22572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
원고, 피상고인 원고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

담당변호사 김진 외 1인

피고, 상고인 ○○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정

담당변호사 문병만

환 송 판 결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2다293395 판결

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2. 8. 선고 2023나61439 판결

판 결 선 고 2024. 6. 13.

## 주 문

1.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41,000,000원에 대하여 2018. 12. 31.부터 2023. 7. 27.까지는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,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, 그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- 2.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.
- 3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# 이 유

## 1. 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확보율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원고에게 계약의 중요 부분 착오를 일으켰다고 본 다음, 이 사건 계약은 이러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조합원 부담금 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.

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.

### 2. 직권으로 판단한다.

가. 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'소송촉진법'이라 한다) 제3조 제2항은 "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 여기서 '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'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'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.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

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,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(대법원 1997. 5. 9. 선고 97다6988 판결, 대법원 2005. 2. 17. 선고 2004다50341 판결,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3다84582 판결 등 참조).

나.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,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.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여진적이 있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.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환송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.

다. 그럼에도 환송 후 원심이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 진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.

#### 3. 결론

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41,000,000원에 대하여 2018. 12. 31.부터 2023. 7. 27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

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,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.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,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,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주 심 대법관 김선수

대법관 노태악

대법관 서경환